

#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721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1. 8. 11.
4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### II. 제안이유

-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인 신청사 사업 규모 조정(축소)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이로 인해 설계변경 및 공사 집행이 지연되고 정책사업(비용자성사업비) 시설비 등이 증감됨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### III. 주요내용

1. (수입계획) 총 167억 2,738만원 감소
  - 교특회계전입금: 188억 9,005만원 감소(보통교부금 감액, 서대문구 천연동 116 매각 지연 및 수색동 129-2 관련 협의 지연 등)
  - 예치금회수: 17억 7,194만원 증가(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 반영)

○ 이자수입: 3억 9,072만원 증가(2021년 12월까지 예상 이자 수입 반영)

2. (지출계획) 총 167억 2,738만원 감소

○ 비용자성사업비: 301억 1,886만원 감소(신청사 사업 규모 조정 계획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 집행 계획 변경)

(단위: 천원)

사업항목	당초계획(A)	변경계획(B)	증감(C=B-A)
본청시설관리(설계비)	13,784	234,300	220,516
본청시설관리(시설비)	31,312,755	1,368,464	△29,944,291
본청시설관리(감리비)	1,638,764	1,350,965	△287,799
본청시설관리(시설부대비)	200,000	92,707	△107,293
합계	33,165,303	3,046,436	△30,118,867

○ 예치금: 133억 9,147만원 증가

3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: 천원, %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	
항목	2021년 수입액			항목	2021년 지출액			
	당초계획(A)	변경계획(B)	증감(C=B-A)		당초계획(A)	변경계획(B)	증감(C=B-A)	증감율(D=C/A)
합계	97,652,487	80,925,098	△16,727,389	합계	97,652,487	80,925,098	△16,727,389	△17.1
교특회계 전입금	39,002,509	20,112,459	△18,890,050	비용자성사업비	33,165,303	3,046,436	△30,118,867	△90.8
예치금수회	58,165,698	59,937,639	1,771,941					
이자수입	484,280	875,000	390,720	예치금	64,487,184	77,878,662	13,391,478	20.7

## IV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**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**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운영계획 변경안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21호로 제출되어 2021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총괄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‘지방기금법’) 제8조<sup>1)</sup>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,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%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<sup>2)</sup>.

---

1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 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2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<생략>  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 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- 따라서 동 변경안 중 지출계획에서 ‘기관운영관리(비용자성사업비)’가 당초 지출금액 331억 6천 5백만원에서 30억 4천 6백만원으로 301억 1천 9백만원이 감소(△90.8%)되고, ‘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’이 당초 지출금액 644억 8천 7백만원에서 778억 7천 9백만원으로 133억 9천 1백만원이 증가(20.7%)됨에 따라 동 기금운영의 변경계획은 지방기금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<sup>3)</sup>.

#### 나. 수입계획에 대한 검토

- 동 변경안 중 수입계획은 당초 수입금액 976억 5천 2백만원에서 809억 2천 5백만원으로 167억 2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,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390억 3백만원에서 201억 1천 2백만원으로 48.4% 감소하고, 예치금 회수가 581억 6천 6백만원에서 599억 3천 8백만원으로 3.0% 증가하였으며, 이자수입이 4억 8천 4백만원에서 8억 7천 5백만원으로 80.7%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.
-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감소는 보통교부금 감액<sup>4)</sup> 및 서대문구 천연동 토지 매각, 수색동 도로 선형 변경 협의 지연 등이 원인으로,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및 공유재산 매각 금액 등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은 각각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와 2021년 12월까지의 예상 이자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③ <생 략>

- 3)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이 20% 이상 변경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정책사업 기준으로 사업명을 명시함. 교육청 「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 안건에서 제시한 “비용자성사업비” 항목의 정책사업이 ‘기관운영관리’이며 ‘예비비’ 항목의 정책사업은 ‘예비비 및 기타’임.
- 4)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 미이행으로 교부금 감액(276억원 ⇨ 138억원), 현재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부합하게 설계 및 공사 계획 변경

[표-2]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변경 수입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장/관/항		변경 (A)	당초 (B)	증감 (A-B)	증감사유
수	입 합 계	80,925	97,652	-16,727	
자	체 수 입	875	484	391	
	이 자 수 입	875	484	391	
	이 자 수 입	875	484	391	예치금 증가 및 지출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
기	타	59,938	58,166	1,772	
	예 치 금 회 수	59,938	58,166	1,772	
	예 치 금 회 수	59,938	58,166	1,772	2020년도 기금 결산 결과 반영
내	부 거 래	20,112	39,002	-18,890	
	전 입 금	20,112	39,002	-18,890	
	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20,112	39,002	-18,890	보통교부금 감액(276억원→ 138억원) 및 토지매각 지연

다.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

- 동 변경안 중 지출계획은 당초 지출금액 976억 5천 2백만원에서 809억 2천 5백만원으로 167억 2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, 이는 ‘기관운영관리(비용자성사업비)’ 가 331억 6천 5백만원에서 30억 4천 6백만원으로 약 90.8% 감소하고, ‘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’ 이 644억 8천 7백만원에서 778억 7천 9백만원으로 약 20.7%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.
- 이 중 ‘기관운영관리(비용자성사업비)’ 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청사 건립에 소

요되는 사업비와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  
입니다<sup>5)</sup>.
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는 22억원 감액하  
였으나 사업 규모는 오히려 833.32m<sup>2</sup> 증가되어 2020년 중앙투자  
심사에서 2019년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  
되어 교부금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<sup>6)</sup>.

[표-2]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변경 내역

구 분	교육부 증투 (2019년) (A)	기본계획변경 (2020년) (B)	증감 (B-A)
사업규모	39,967.6m <sup>2</sup>	40,800.92m <sup>2</sup>	833.32m <sup>2</sup>
총사업비 (교부금)	1,321억 (396억)	1,299억 (276억)	△22억

-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3월부터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설계  
및 공사 계획을 변경하였는바<sup>7)</sup>,

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‘기관운영관리(비용자성사업비)’가 대폭  
감소된 것은 이러한 신청사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설계 및 공사 계  
획 변경으로 인해 공사 착수 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.

- 그리고 ‘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’은 이와 같은 신청사 설계 및 공  
사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지출계획의 감소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입

5) ‘2019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’,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-5823(2019.10.1.)

사업명	결과	부대 의견
서울교육청 청사이전	조건부	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

6)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사업일 경우 사업 준공 시까지 조건 이행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됨. 2020년 수정된  
기본계획이 2020년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 미이행으로 처리되어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.

7) \* 신청사 건립 향후일정

- 설계변경(인허가) : ‘21.3월 ~ ‘21.8월 (6개월)
- 기본계획변경(예정) : ‘21.8.23 ~ 8.27.
- 공사 발주 및 계약 : ‘21.9월 ~ ‘21.12월 (4개월)
- 본공사추진 : ‘22.1월 ~ ‘24.8월 (32개월)
- 신청사 이전 : ‘24.9월 ~ ‘24.11월 (3개월)

니다.

- 이와 같이 금번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당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바,

동 변경안에 별도의 문제는 없으나,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 등으로 공사계획이 재수립된 만큼 계획변경으로 인해 신청사 완공시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3]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변경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사업		변경 (A)	당초 (B)	증감 (A-B)	증감사유
지 출 합 계		80,925	97,652	-16,727	
예 비 비 및 기 타		77,879	64,487	13,392	
	예 비 비 및 기 타	77,879	64,487	13,392	
	내 부 유 보 금 ( 예 치 금 )	77,879	64,487	13,392	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가
기 관 운 영 관 리		3,046	33,165	-30,119	
	교 육 행 정 기 관 시 설	3,046	33,165	-30,119	
	본 청 시 설 관 리 ( 신 청 사 건 립 )	3,046	33,165	-30,119	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
	직 속 기 관 시 설 관 리 ( 연 수 원 건 립 )	0	0		

- 이상으로 「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합니다.



# 관계법령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